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의료·생활·주거 지원 근거 마련 〉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80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 검토의견	4
------------------	---

1. 지원대상자 정의에 ‘기술습득’ 용어 추가	4
---------------------------------	---

2.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의료·생활·주거 지원 근거 마련 ...	6
---	---

3.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의 일부 위임	9
----------------------------	---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0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60년대 한국은 전후 복구와 시급한 경제발전, 높은 실업률의 해결을 과제로 안고 있었으며, 서독은 동독의 노동력 유입 중단 등으로 탄광 인력의 부족을 겪었음.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약 7,936여명의 광부와 약 1만 1,057여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독일에 파견하였음.

파독 광부·간호사는 다른 해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한국 산업발전의 가장 초기,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에 당시 3년간의 국내 송금액은 총 수출액의 1.8%에 이르는 것이었음. 이와 같은 독일 파견 근로는 해외 인력수출을 통한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및 외화획

득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국민소득 증가 등 투자증대를 가지고 오는 한편, 서독 등 주요국과의 정치외교적 우호 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와 한국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한 바 있음.

그러나 오늘날 많은 파독 광부·간호사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했고, 주거 불안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사회적 교류가 미비하여 가족과 친지 등 비공식적 지지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규폐증과 진폐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들에 의한 국가적 기여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념사업 등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며 아울러 지역문화를 활성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파독 광부·간호사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

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의하여 파독되었으며로 기술습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파독 광부·간호사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의료·생활·주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신설).

다.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기념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며 아울러 지역문화를 활성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원대상자 정의에 ‘기술습득’ 용어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법률이 적용되는 지원대상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서 ‘기술습득 및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 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조(지원대상) -----
1.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1.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기 술습득 및 임금-----

한 광부	-----
2.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	2. -----
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	-----
69년 8월 체결된 「한국해외	-----
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	-----
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u>임</u>	----- <u>기</u>
<u>금</u>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u>술습득 및 임금</u>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현행법은 지원대상자를 특정한 시기(광부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간호사·간호조무사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에 한국과 서독 사이의 각종 협정이나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에 따라 독일에 임금을 목적으로 진출하여 근로를 제공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의 근로제공 목적인 임금에 기술습득을 추가하여 근로 제공 목적의 요건을 더 엄격히 규정하는데, 제안이유 등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파악할 수 없어 입법의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의료·생활·주거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이하 ‘파독근로자’라 함)에 대한 국가의 의료·생활·주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 -----. 1. ~ 3. (현행과 같음) <u>4.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u> <u>5. 주거지원금</u>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파독근로자에게 ①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 제공 ②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실시, ③파독근로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가 파독근로자에게 의료·생활·주거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국가의 생활지원이나 의료지원은 ①범죄피해자, 과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희생자·피해자·유가족, 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있는데,¹⁾ 파독근로자에게 이들과 같은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②당초 제정안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나²⁾ 환노위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점을³⁾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③같은 기간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로 진출한 근로자(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베트남 등)에⁴⁾ 대하여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고려사항과 함께 파독기간이 종료된 이후 파독근로자의 40% 정도만 귀국하고, 나머지는 독일에 잔류하거나, 유럽, 북미 등 기타 제3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는데,⁵⁾ 이들의 생존여부나

1) 참고1. 의료·생활지원금 관련 유사 입법례

2)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10398,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제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금액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2020. 5.11.) 심사과정에서 수정·의결되었음

4) 해외진출 근로자(한국노동통계연감, 1976) ① 베트남 25,287명('65~'75년), ② 일본 6,573명('65~'75년), ③ 중동 약 86만명('76년~ '90년대 중반)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8), p. 218.

국내거주 여부 등 기초적인 자료가 미비하므로⁶⁾ 파독근로자의 생활 및 거주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파독 광부·간호사로 대한민국 거주국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체계 상 의료·생활·주거 등 복지제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파독근로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 목적으로 해외 거주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현행 복지제도에 따른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되어야 하고 보훈대상자, 특수 피해자 등에 준하여 의료·생활 지원을 받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재외동포청은 파독법에 따른 지원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주거지원금으로 확대할 경우, 국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개정안 문언으로는 국외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6)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재정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추가 재정소요가 예측되나, 대상자의 생존여부, 국내거주 여부 등에 관한 자료가 미비한 점,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범위 및 지급방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3.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의 일부 위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업무의 위탁) <신 설>	제6조(업무의 위임·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의 시행을 위한 모든 권한은 국가로 일원화 되어 있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률상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법이 규정하는 내용들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파독 광부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⁷⁾ 개정안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5

7) (전북)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24.5.31) / (경북)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24.1.11) /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조례('19.6.27) / (양구군)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양구군 공동쉼터 조성 및 운영조례('20.11월) → 폐지('23.9월)

참고1

의료 · 생활지원금 관련 유사 입법례

구분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국가 유공자법	• 국비진료(제42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대상 보훈병원 진료 • 감면진료(제42조) - 의료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등 대상 보훈병원 진료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	• 생활조정수당(제14조)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
범죄 피해자 보호법	• 손실 복구 지원 등(제7조) -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 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 손실 복구 지원 등(제7조) - 범죄피해자의 근로능력상실 또는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 필요 시(「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세월호 피해 지원법	• 생활지원금 등(제23조) - 피해자의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인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 등(제23조) -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인 생활지원금
5·18 보상법	• 의료지원금(제6조) -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이를 입은 사람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은 치료·간병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일시 지급 • 의료급여의 지원(제6조의3) -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받은 사람 등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음	• 생활지원금(제7조) -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기타지원금(제22조)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구분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부마항쟁 보상법	•의료지원금(제23조)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해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해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	•생활지원금(제22조) -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위안부 피해자법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제4조)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제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포항지진 피해 구제법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제14조) -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 등)	
강제동원 조사법	•의료지원금(제6조)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